

관세법개정법률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법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면상 관세법개정법률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였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 법령개정안내)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6305호

관세법개정법률

관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 세 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 나.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 다.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 라.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 마.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5. “외국무역선”이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6. “외국무역기”라 함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7.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8. “내항기”라 함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빗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0. “기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1.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2. “통관”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13.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싣는 것을 말한다.
- 14. “운영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 나.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픽방지관세

제51조(덤픽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 (이하 “덤픽”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픽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픽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픽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저연된 경우

제52조(덤픽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픽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덤픽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픽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픽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을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당해 물품에 대한 덤픽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허용 요구에 불응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픽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픽방지관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된 경우
 - 3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덤픽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플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있어서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상계관세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의 부과를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수락된 경우

- 2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의 내용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된 약속은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보복관세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국가·물품·수량·세율·적용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4관 긴급관세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국제통상관계·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는 200 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과 대외무역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등(이하 이 조 및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수입관리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 또는 대외무역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

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 ③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과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관 조정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①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관 할당관세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수량·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관 계절관세

제72조(계절관세) ①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관 국제협력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관 편의관세

제74조(편의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

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제11관 일반특혜관세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해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의한 최빈개발도상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적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를 지정하거나 당해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 정부는 외국에 있어서의 가격의 하락 기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하여 이 법에 의한 세율 또는 수정후의 세율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한 협의에 따라 그 물품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 ② 제1항제2호의 조치는 동항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조약에 의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의한 세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 ② 제1항 각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대상국가·시기·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때에는 당해 조약에 의하여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